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5항)

1) 경미한 심의사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으로 심의하는 규정 신설

나. 회의의 비공표 조항 삭제(안 제9조)

1) 상위법에 회의록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 내용 비공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22. 2. 14. ~ 2022. 3. 7.)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지역활력과-1272(2022. 3. 11.)]

4)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11915(2022. 3. 11.)]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별첨 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회의)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의) ① ~ ④(생략) <신 설>	제5조(회의) ① ④(현행과 같음)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이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 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별첨 2]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방 태 선